

의안번호	2200494
의 퇴 인	이병진의원
회 답 일	2024. 7. 3.
추 계 번 호	24B0637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0조제8항 신설(민간해양구조대원등의 처우)	구조업무에 참여한 <u>민간해양구조대원과 어민 등의 장비</u> 가 해상구조 업무와 교육·훈련 등 조난사고 예방·대응 활동 등과 관련하여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 <u>수리비용</u> 과 어민이 입게 되는 <u>조업손실</u> 등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민간해양구조대원과 어민 등에게 수리비용을 <u>보상</u> 할 수 있음(제8항)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또는 추계대상 제외 사유)
1	안 제30조제8항 신설(민간해양구조대원등의 처우)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민간해양구조대원등의 처우—장비 수리비용 등 보상(안 제30조제8항 신설)

□ 개정안에 따라 구조업무에 참여한 민간해양구조대원과 어민 등의 장비 고장 또는 파손에 대해 수리비용과 조업손실 등을 보상하는 경우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현행법에는 민간해양구조대원등의 장비 수리비용 및 조업손실에 대한 손실 보상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따라 민간해양구조대원등에 대한 손실보상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음

- 다만,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이라 함) 제11조의2¹⁾에 따라 민간해양구조대원이 입은 손실에 대해 일부 보상중임

※ [참고자료 1]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민간해양구조대원 손실보상 절차,
[참고자료 2]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일반인 포함) 활동 중 피해 사례 참고

□ 개정안에 따른 민간해양구조대원 및 어민등의 손실보상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해상구조 중 발생한 장비 파손·고장 등 물적 피해 및 피해 금액, 해상구조로 발생한 조업손실 규모 및 금액, 보상률 등의 자료가 필요함

○ 예를 들어 손실보상 추가재정소요 추계를 위한 산식은 다음과 같음

$$\begin{aligned} \text{추가재정소요} &= \sum_{i,t} (\text{손실보상금액})_{i,t} \\ &= \sum_{i,t} (\text{손실보상 유형} \times \text{피해액} \times \text{보상률})_{i,t} \end{aligned}$$

- 이때 t = 추계기간 5년

i = 유형별 손실유형(예: 장비 파손 또는 고장, 조업손실 등)

□ 그러나 향후 해상구조에 참여하게 될 손실보상 대상 선박의 선종, 조업 어종 및 조업 방식, 해당 선박의 파손·고장 여부 및 유형별 수리비용 등의 예측이 불가하여, 현시점에서는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1)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손실보상) ①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신청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④ ~ ⑦ (생략)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이주호	이유미

☐ 대표연락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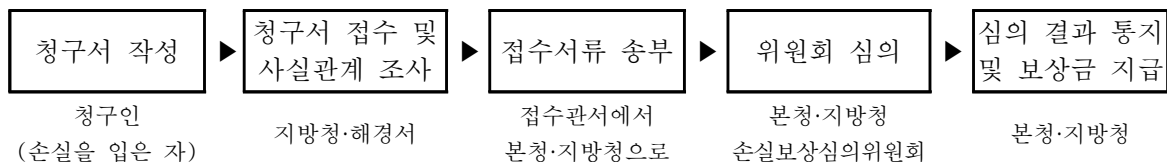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주호	02-6788-3746	progress@nabo.go.kr

[참고자료 1]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민간해양구조대원 손실보상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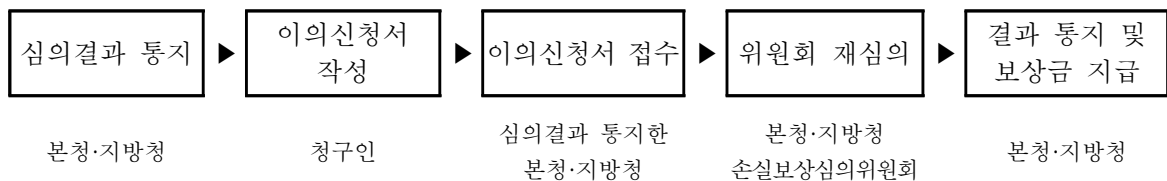
(해양경찰청 제출자료)

□ 민간해양구조대원 손실보상 절차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손실보상)²⁾ 규정에 따라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생명·신체·재산상 손실을 보상
-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10조(손실보상의 지급 절차 및 방법)³⁾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함



※ 이의신청 시 절차



- 2)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손실보상) ①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 ② (생략)
-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신청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 ④ ~ ⑦ (생략)
- 3)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10조(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① 법 제11조의2에 따라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손실보상청구 사건 발생지를 관할하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해당 청구서를 제11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할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경찰청, 해양경찰청, 시·도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의 장(이하 “경찰청장등”이라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경찰청장등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却下)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 (이하 생략)

[참고자료 2]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일반인 포함) 활동 중 피해 사례

(해양경찰청 제출자료)

□ 총괄

(단위: 천원)

구분 (발생일)		물적 피해					인적 피해					
		피해 추산	보상금액			비고	피해 추산	보상금액				비고
			손실 보상 (「경직법」)	제3자 보험 ¹⁾	수상 구조법			손실 보상 (「경직법」)	단체 보험	수상 구조법	의사 상자 ²⁾	
'18년	계	7,600	—	—	—		—	—	—	—	—	
	(10.3.)	7,500	—	—	—	조난자 직접 보상	—	—	—	—	—	
	(10.6.)	100	—	—	—		—	—	—	—	—	
'19년	계	3,600	—	—	—		3,600	2,020	—	—	—	
	(1.15.)	2,600	—	—	—		—	—	—	—	—	
	(1.19.)	—	—	—	—		3,600	2,020	—	—	—	
	(5.3.)	1,000	—	—	—	수협보험	—	—	—	—	—	
'20년	—	—	—	—	—		—	—	—	—	—	
'21년	계	141,640	4,140	—	—		1,000 및 우안실명	—	500	—	110,500	
	(3.29.)	130,000	—	—	—	수협보험	—	—	—	—	—	
	(4.17.)	400	—	—	—		—	—	—	—	—	
	(5.8.)	650	—	—	—		—	—	—	—	—	
	(7.31.)	10,000	3,550	—	—		—	—	—	—	—	
	(10.5.)	—	—	—	—		500	—	500	—	—	
	(10.21.)	—	—	—	—		우안실명	—	—	—	110,500	의상자 5급
	(10.25.)	—	—	—	—		500	—	—	—	—	
	(12.20.)	590	590	—	—		—	—	—	—	—	
'22년	계	71,823	53,420	10,373	—		324 및 전치2주	—	—	324	11,080	
	(2.12.)	30	—	—	—		—	—	—	—	—	
	(3.4.)	—	—	—	—		전치2주	—	—	—	11,080	의상자 9급
	(4.22.)	2,300	2,300	—	—		—	—	—	—	—	
	(5.17.)	51,120	51,120	—	—		—	—	—	—	—	
	(6.17.)	8,000	—	—	—		—	—	—	—	—	
	(7.15.)	10,373	—	10,373	—		—	—	—	—	—	
	(9.3.)	—	—	—	—		324	—	—	324	—	

구분 (발생일)		물적 피해					인적 피해					
		피해 추산	보상금액			비고	피해 추산	보상금액				비고
			손실 보상 (「경직법」)	제3자 보험 ¹⁾	수상 구조법			손실 보상 (「경직법」)	단체 보험	수상 구조법	의사 상자 ²⁾	
'23년	계	14,359	9,849	—	422		—	—	—	—	—	
	(5.22.)	6,082	1,994	—	—		—	—	—	—	—	
	(7.9.)	2,655	2,655	—	—		—	—	—	—	—	
	(8.18.)	422	—	—	422		—	—	—	—	—	
	(10.6.)	5,200	5,200	—	—		—	—	—	—	—	
'24. 5월	계	792	72	—	—		전치6주	—	—	—	11,000	
	(4.12.)	—	—	—	—		전치6주	—	—	—	11,000	의상자 9급
	(5.4.)	792	72	—	—		—	—	—	—	—	

주: 1) 민간해양구조대원 단체보험지원(연간 6.5억): **사망(5천만원), 장해(5천만원)**, 입원비(1일 3만원, 180일 한도), 입원 의료비(1천만원 한도), 외래의료비(20만원 한도), 처방조제(5만원 한도), 타인에 대하여 신체/재물상 손해를 준 경우 배상책임('21년 1천만원 → '22년 1억 한도로 상향)

2) 의사상자: 복지부 예산(기타보전금, 연 28억), 복지부 → 지자체 → 대상자

※ 미보상, 즉 피해보상 신청이 없거나 개인보험으로 처리한 경우가 포함되어 있음

※ 손실보상 소멸시효: 손실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손실 발생일로부터 5년(「경직법」 제11조의2 제2항)

자료:해양경찰청 제출자료

□ 민간해양구조대원등(일반인 포함) 활동 중 사고 사례

(해양경찰청 제출자료)

연번	일자	관할	사고유형	사고내용 (제3자 피해)	피해규모	비고
1	'18.10.3.	평택 해경서	물적피해 (본인 및 상대)	'18.10.3.(수) 14:41경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소재 입파도 인근해상에서 그물에 걸린 모터보트 구조 과정 중 동원 민간해양구조대원 선박 선체파손 및 김양식장 파손으로 배상청구 요구	선체 수리비 70만원 양식장 수리비 500만원	
2	'18.10.6.	부산 해경서	물적피해 (본인)	'18.10.6.(토) 23:16경 낙동강 하굿둑 투신자 수색구조 활동 중 낙동강 해상 부유물(쓰레기)로 인하여 선박 스크류 손상발생, 자체수리(비용 10만원)	수리비용 10만원	
3	'19.1.15.	제주 해경서	물적피해 (본인)	'19.1.15. 10시경 제주항 북동방 5해리에서 해양경찰 요청을 받아 구조작업을 하던 중 예인줄이 연결된 말뚝 파손	수리비 260만원	
4	'19.1.19.	서귀포 해경서	인적피해 (본인)	'19.1.19. 17시경 우도 남동방 7해리 해상에서 스크류 감긴 선박 구조를 위한 예인작업 중, 좌수 무지 골절(전치 16주)	보험금 인상분, 비급여 진료비 약 360만원	
5	'19.5.3.	동해 해경서	물적피해 (본인)	'19.5.3. 19시경 사천항 동방 0.2해리에서 정치망에 걸린 선박 구조업무 지원 차이동 중 갑작스런 돌풍과 너울성 파도로 테트라포드와 충돌하며 선체 피해 발생	수리비 100만원	
6	'21.3.29.	통영 해경서	물적피해 (본인)	'21.3.25. 15시경 통영시 해간도 남서방 0.35해리 인근 해상에서 (신)거제대교 실종의심자 해상 수색 중 암초에 좌초, 선체 파공·기관실 침수	수리비 1억 3천만원	
7	'21.4.17.	평택 해경서	물적피해 (본인)	'21.4.17. 13시경 삼길포항 출항 선박이 원인 미상의 시동 꺼짐이 발생하여 신고한 사항으로 예인작업 중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 분실	40만원 상당의 핸드폰 분실	민간해양구조대원
8	'21.5.08.	서귀포 해경서	물적피해 (본인)	'21.5.8. 15시경 구좌읍 스쿠버업체 앞 해상에서 수상오토바이 이용 익수자를 구조보드로 인양과정 중 수상오토바이가 간출암에 부분적 파손	수리비 65만원	민간해양구조대원
9	'21.7.31.	제주 해경서	물적피해 (본인)	'21.7.31. 제주 추자도 남방 0.8해리에서 예인 중 저수심 해역에서 추진기 손상	수리비 1,000만원	
10	'21.10.5.	평택 해경서	인적피해 (본인)	'21.7.31. 연안정화 활동 중 방파제에 추락하여 안면 좌측 눈꼬리에 열상으로 인한 출혈과 혼절로 봉합, 1주 입원치료	입원치료비 50만원(1주)	민간해양구조대원
11	'21.10.25.	여수 해경서	물적피해 (본인)	'21.10.25. 여수 여자만 실종자(선원 2명) 수색 관련 드론을 이용해 실종자 수색 중 원인미상의 조종 불능상태가 되어 해상 추락·분실	50만원 상당의 드론 분실	
12	'21.10.21.	울진 해경서	인적피해 (본인)	'21.10.21. 독도 북동방 11일진호 전복사고 관련 민간구조선박 선원이 구조활동 중 안면 부상으로 인한 수술 및 치료	안명 부상, 우안 실명	

연번	일자	관할	사고유형	사고내용 (제3자 피해)	피해규모	비고
13	'21.12.20.	부산 해경서	물적피해 (본인)	'21.12.20. 13시경 북형제도 남서방 1.3해리에서 항해 중이던 어선 기관고장 신고, 다대파출소 요청으로 사고선박 예인 중 기상불량으로 사고선박과 접촉되어 선체 파손	수리비 594,000원	
14	'22.2.12.	여수 해경서	물적피해 (본인)	'22.2.12. 광양 이순신대교 실종자(1명) 수색 관련 드론을 이용해 실종자 수색 중 원인미상의 원인으로 항포구 인근 야산으로 기체 추락	수리비 3만원	
15	'22.3.4.	인천 해경서	인적피해 (본인)	'22.3.4. 16:26 구조행위자는 인천 중구 월미광장 앞 해상 도보산책 중 익수자가 해상에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발견, 119 최초 신고 후 구명환을 던져 구조세력이 오기 전까지 익수자를 붙들고 구조 도중 발목·허리 부상	발목, 허리 부상 (전치 2주 입원치료)	
16	'22.4.22.	목포 해경서	물적피해 (본인)	'22.4.22. 10:00경 신안파출소 요청에 의하여 경찰관 편승 후 현장 확인 차 남해호가 이동 중, 수중의 김발 쇠말뚝에 의한 스크류 파손	수리비 230만원	
17	'22.5.17.	보령 해경서	물적피해 (본인)	'22.5.17. 23:42경 충남 서천 아항도 동방 0.2마일 갯벌에서 포터차량이 갯벌에 빠져 신고, 장항파출소 순찰차, 견인차, 민간구조대 차량, 트랙터가 구조작업 중 밀물로 고립되어 총 5대가 침수	차량 3대 침수 피해 (약 5천만원)	
18	'22.6.17.	평택 해경서	물적피해 (본인)	'22.6.17. 12:30경 민간해양구조세력 새벽호가 안산 시화호 조력발전소 인근 해상 수색 중 수중 테트라포드로 인한 스크류 손상	수리비 800만원	
19	'22.7.15.	속초 해경서	물적피해 (해경 구조정)	'22.7.15. 속초항 아바이마을 협수로에서 침수선박 대응 중 민해선이 해경 연안구조정 접촉으로 워터제트 손상	수리비 10,373,000원	
20	'22.9.3	인천 해경서	인적피해 (본인)	'22.9.3. 13:49경 인천 영종도 을왕리 해수욕장에서 요구조자 1명(5살)이 강한 바람으로 인해 물에 떠밀려가는 상황을 선착장에서 지나가던 어선 선장이 발견 후 인명구조를 위해 직접 입수, 인명구조 활동 중 전치 2주 부상	치료비 323,990원	
21	'23.5.22.	제주 해경서	물적피해 (본인)	'23.5.22 17:23경 한림파출소로부터 사고선박(제203영동호) 예인 지원 요청을 받고 임무 수행 중 우현 비트 완전 파손	수리비 6,082,670원	
22	'23.7.9.	목포 해경서	물적피해 (본인)	'23.7.9. 7:06경 목포해경 상황실 요청에 의하여 기관고장 선박 구조 지원차 현장 이동중, 저시정으로 인한 다시마 양식장 어망줄에 스크류 감김	양식장 로프, 다시마 피해 2,655,000원	

연번	일자	관할	사고유형	사고내용 (제3자 피해)	피해규모	비고
23	'23.8.18.	사천 해경서	물적피해 (본인)	'23.8.18.(금) 12:36경 침몰선박(선창호) 실종자 수색 관련, 드론 이용 해상수색 중 전파장애로 인한 조종불능으로 기체 해중 추락, 간조시 기체 회수하였으나, 해수유입으로 인한 기체 전손	수리비 422,650원	
24	'23.10.6	목포 해경서	물적피해 (본인)	'23.10.6. 11:10경 가거도 응급환자(심부전증) 이송 및 1010함 인계중 방파제 앞 해상 심한 너울성 파도(1.5m)로 인해 1010함 좌현 함미측과 섬호(민해선) 우현 선미측 접촉으로 섬호 안전난간 2개소 및 앵커 보관함 문 파손	수리비 및 이동유류비 5,200,000원	
25	'24.4.12	태안 해경서	인적피해 (본인)	'24.4.12 16:47경 충남 태안군 영목항 침수차량 발생, 영목파출소 요청으로 어선 이동 후 의식 없는 요구조자(운전자)를 구조하던 중, 손가락 부상	손가락 신전건 부분 파열 (수술, 전치6주 통원 치료)	
26	'24.5.4	서귀포 해경서	물적피해 (본인)	'24.5.4. 서귀포 위미항 남방 0.4해리 해상에서 전복 선박(나아가라호) 예인 중 민해선(대성호) 우현 비트 완전 파손	수리비 792,000원	